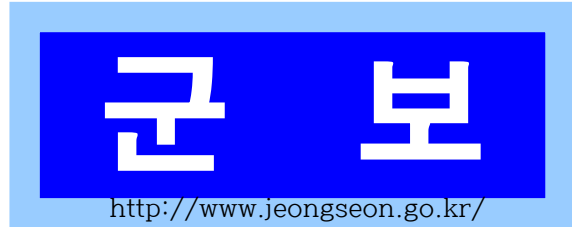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384호 2016. 3. 7.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484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485호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 10
- 정선군 조례 제2486호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정선군 조례 제2487호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 18
- 정선군 조례 제2488호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 27
- 정선군 조례 제2489호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정선군 조례 제2490호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정선군 조례 제2491호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39
- 정선군 조례 제2492호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 정선군 조례 제2493호 정선군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45
- 정선군 조례 제2494호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조 례

제227회 정선군의회(2016. 2. 19.)에서 의결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484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되어 처리 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3조,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증명>			
1. 병적에 관한 증명			
○ 병적증명	1통	200원	
2.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			
○ 부양사실증명	1통	300원	
3.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 영업주	1통	500원	
○ 중소기업자	1통	500원	
○ 광업, 공업, 상업	1통	500원	
○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 생산실적	1통	300원	
○ 수출실적	1통	300원	
○ 납품실적	1통	300원	
○ 건물사용	1통	300원	
○ 공장원료사용수요	1통	300원	
○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300원	
○ 공장등록 증명	1통	1,000원	
○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가소요량	1통	300원	
- 확정소요량	1통	1,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지적관계 제외
○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 미분배 농지	1통	300원	
○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	1통	300원	
- 건물도면	1통	300원	
- 토지도면	1통	300원	
○ 공부 및 열람			
- 기본료	시간당	100원	
- 초과료	10분당	100원	
○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6.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컬러출력	1필지	1,500원	
○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2,000원	
○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원	
○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300원	
○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300원	
○ 채비지 분할 신청	1필지	300원	
○ 토지대금 완납증명	1필지	300원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8. 회계에 관한 증명			
○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300원	
○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300원	
○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300원	
○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300원	
○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 면세용도물품 증명	1통	300원	
9. 자동차에 관한 증명			
○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000원	
○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	1통	300원	
○ 경력(운전, 무사고)증명	1통	500원	
10. 주택에 관한 증명			
○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 표준주택설계도면	1건	1,500원	
11. 기타 제증명			
○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 화재증명원	1통	800원	
○ 소방시설완비 증명	1통	500원	
○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원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원	
○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원	
○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원	
12. 채무불이행자 명부열람 증명			
○ 열람	1건	300원	초과1매당 100원추가
○ 등사	1건	300원	
○ 정본 및 등본	5장까지 초과1장당	300원 30원	
○ 초본	1건	300원	
○ 증명서	1건	3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3.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	1건	600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 행정서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	신규 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 3,000원	
○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1건	500원	
○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건	50원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2. 보건사회관계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5,000원	
○ 안경업소개설 등록 신청	1건	15,000원	
○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원	
○ 묘지개장허가 신청	1건	500원	
○ 시체운반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원	
○ 이미용 신규면허증 발급	1건	5,500원	
○ 이미용 신규면허증 재발급	1건	3,000원	
○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사실증명서발급	1건	500원	
○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허가 및 변경허가	1건	500원	
○ 의례식장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원	
○ 의례식장 등 명칭 변경신고	1건	5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원	
3. 농수산 관계			
○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200원	
○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000원	
○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5,000원	
○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	1건	1,000원	
4. 산업자원 관계			
○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 주유소	1건	20,000원	
- 용제판매소	1건	10,000원	
○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원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5. 산림관계			
○ 임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500원	
○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6. 건설관계			
○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500원	
○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1건	1,000원	단, 점용료가 300,000원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 및 보상비 제외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토석, 사력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1,000원	
○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원	
○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이하의 배	1건	500원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	1건	900원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	1건	1,300원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1건	2,100원	
○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 건축사 신상변동사항 신고	1건	500원	
○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1건	500원	
○ 공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 채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원	
○ 토지사용(채비지) 승낙서	1건	500원	
○ 채비지 확인서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원	
○ 채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건	500원	
7. 관광문화관계			
○ 출판사, 인쇄소 등록	1건	6,000원	
○ 출판사, 인쇄소등록사항 변경	1건	5,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신청	1건	30,000원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 공연장등록	1건	15,000원	
○ 공연장변경등록	1건	7,500원	
○ 체육시설업 신고<개정 2010.12.15>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 종합유원시설업			
- 허 가	1건	60,000원	
- 변경허가	1건	30,000원	
- 변경신고	1건	30,000원	
○ 일반유원시설업			
- 허 가	1건	50,000원	
- 변경허가	1건	22,500원	
- 변경신고	1건	22,500원	
○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30,000원	
○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1건	30,000원	
8. 각종 제증명 발급시 도면이 첨부될 경우	1건	400원	
9. 부동산중개업 관계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개설 신청	1건	10,000원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개 정 이 유

- 불합리한 규제로 선정된 과다 수수료 등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일부 개정.

주 요 내 용

- 표준금액 초과분 인하(6종)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30,000원→ 15,000원)
 - 안경업소개설 등록 신청(20,000원→ 15,000원)
 - 공연장 등록(60,000원→ 15,000원)
 - 공연장 변경등록(30,000원→ 7,500원)
 -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25,000원→ 22,500원)
 - 일반유원시설업 변경신고(25,000원→ 22,500원)
- 표준금액 과소분 인상(5종)
 - 종합유원시설업 허가(50,000원→ 60,000원)
 -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25,000원→ 30,000원)
 - 종합유원시설업 변경신고(25,000원→ 30,000원)
 - 이미용 신규면허증 발급(2,300원→ 5,500원)
 - 이미용 신규면허증 재발급(2,000원→ 3,000원)
- 제증명 용어 정리로 건별 수수료 명확화

제227회 정선군의회(2016. 2. 19.)에서 의결된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485호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에 규정되어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

주 요 내 용

-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제227회 정선군의회(2016. 2. 19.)에서 의결된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486호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를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4”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16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사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2.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택도 조사, 잔반그래프 설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적 구매의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칙 별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규칙 별지 제4호의5 및 제4호의6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호 전단 중 “위탁 10일전까지 위탁계약서”를 “위탁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를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영업 중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3. ----- ----- ----- <u>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 ----- ----- ----- ----- -----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발생억제) ① ~ ③ (생 략)	제8조(발생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u>	④ <u>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16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u>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u>집단급식소,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u>	<삭 제>

음식점 영업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이 식사량을 고려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형찬기와 복합찬기를 활용하여 적절한 양의 반찬을 제공하는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개설·운영하는 자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적 구매의 홍보 등을 통해 조리 이전 단계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사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2.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택도 조사, 잔반그라프 설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신 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 략)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 신고서)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전까지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적 구매의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
-----.

1. · 2. (현행과 같음)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

1. 규칙 별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규칙 별지 제4호의5 및 제4호의6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
----- 위탁계약서 -----

-----.

3.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다량배출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가. ~ 라. (생략)

6. (생략)

제18조(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

가. ~ 라.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18조(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82호, 2014. 01. 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환경부령 제542호, 2014. 01. 17.)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 요 내 용

- 다량배출사업장 발생억제 사항 개정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보완 요청 사항(안 제8조)
 - 다량배출사업자 구분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 신설
 - 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의 위탁재활용 사항에 대한 자료 보완 요청 근거 마련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관련 사항(안 제16조)
 - 상위법조항 신설에 따른 신고 서식 및 신고증명서 발급 서식 조정
-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 부여 조항 삭제(안 제18조)
 - 상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2개월의 개선기간 삭제

제227회 정선군의회(2016. 2. 19.)에서 의결된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87호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치·조성한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자연환경 보전 및 그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안에 설치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리수탁자”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휴양림 및 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군소재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3. “현장책임자”란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의 명을 받아 그 안내,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시설 등의 관리 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관리수탁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휴양림 안에 그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야영장(야영테크 및 노지야영장을 말한다)
2. 산림복합경영단지
3.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4. 편의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장 시설 등의 사용

제5조(야영장) ① 야영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이하 “예약”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예약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약은 그 신청 후 3일 이내(사용일 전 3일 이내에 예약할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로 한다)에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성립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는 해당 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약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신청순서에 따른다.

④ 현장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예약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예약 및 사용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시설사용권의 규격·모양 및 기재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며 이를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을 한 때에는 사용 첫 날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2. 관리수탁자의 귀책사유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환불기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수목 등에 손실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할 경우
2.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제한 또는 입장금지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그 게시에 관하여는 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게시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입장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1. 사용료와 그 반환사유 및 환불기준
2. 제8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
3. 제9조에 따른 사용제한 및 입장금지의 사유와 그 기간

제11조(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사용·수익허가, 위탁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약으로 정한다.

제3장 시설 등의 관리위탁

제12조(관리수탁자) 군수는 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단체 등 중에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 ① 시설 등 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때에는 갱신할 경우마다 해당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하며, 그 평가의 대상, 기준, 항목, 배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계약체결)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관리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 및 기간

2.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3. 관리수탁자의 의무와 명의 및 책임
4. 사용료 수입처리 및 위탁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도·감독) 군수는 관리수탁자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6조(계약취소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받지 못한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때
3. 법령,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4. 시설 등에서 위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5. 위탁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운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4장 보칙

제17조(준용규정) 시설 등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서 정한 사항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휴양림 안에 설치한 시설과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시설 및 관리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별표 1]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야영 데크(4×4m)			노지야영장			비 고
	성수기 (7~8월)	비 수 기		성수기 (7~8월)	비 수 기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야영장	20,000	10,000	20,000	10,000	5,000	10,000	텐트1조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2. 성수기는 7. 1부터 8. 31까지로 하며, 비수기는 9. 1부터 다음해 6. 30까지로 한다.
3. 비수기 주중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주말은 금, 토, 일, 공휴일로 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5. 전기사용은 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소형가전만 사용(총 합계 500W 미만) 가능하며,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별표 2]

시 설 사 용 권(제6조제1항 관련)

(앞면)

편 철 부 분	<u>○○○이용권 원부</u>	<u>○○○이용권</u>	대 표 적 사 진	7cm
	No. _____	No. _____		
	○○○○자연휴양림 원 ()	○○○○자연휴양림 원 ()		
	정 선 군 수	정 선 군 수 해당 날짜에 한정하여 유효함 (00시~다음날00시)		
2cm	3cm	3cm	10cm	

(뒷면)

<u>시 설 배 치 도</u>	<u>알리는 말씀</u>	편 철 부 분	7cm
	- 공중질서를 지킵시다. - 쓰레기를 줄입시다. - 휴양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합시다 - 자연을 보호합시다. - 산불을 조심합시다.		
	☞ 자연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 온것! ☜		
8cm	5cm	3cm	2cm

※ ()안에는 시설이용료의 구분내용 (야영장 번호)

[별표 3]

시설사용료의 환불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환 불 기 준
1.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 또는 해지된 때	○ 이용일 3일 전 예약 취소: 전액 환불 ○ 이용일 2일 전 예약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 이용일 1일 전 예약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 ○ 이용 해당일 예약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 이용 중 해지: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100분의 50
2.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 또는 해지된 때	○ 이용 전 예약 취소: 전액 환불 ○ 이용 중 해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 또는 해지된 때	○ 이용일 전 취소: 전액 반환 ○ 이용 중 해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개 정 이 유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입장 및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 삭제 및 휴양림 내 산림복합경영단지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타 조례 체계성 등 일부 미비점 보완.

주 요 내 용

- 조례 제명 정비
 -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야영장, 산림복합경영단지,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운영
- “사용료”의 대상시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야영장”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
-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사용·수익허가, 위탁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조문 정비

제227회 정선군의회(2016. 2. 19.)에서 의결된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88호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라 정선군 내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건전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수면어업(이하 “내수면어업”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내수면어업 관리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서 내수면 어업의 허가(육상양식장은 제외한다) 및 신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제3조(구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같은 조 제4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3.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산담당 주사가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우선순위 결정 및 허가배제
2.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3.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협의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3장 내수면어업허가

제11조(구역 및 정수) 내수면어업허가 구역 및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마을공동어업의 경우에는 그 허가정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우선순위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허가 우선순위에서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하천오염방지 및 내수면 생태계 보호(어족자원 보호를 포함한다)에 기여한 사람
3. 의무와 책임감이 강하고 주·야간 불법어업 행위 감시가 가능한 사람
4. 유어활동(낚시를 말한다)동호인 등 지역주민과의 불협화음이 없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내수면이 있는 읍·면에 해당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3조(허가기간) 내수면어업 허가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동일구역 내 후순위 신청자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은 제한되며, 순환제를 실시한다.

제4장 내수면어업허가 제한

제14조(어구의 제한) 부령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허가 규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공익을 위한 제한) 군수는 공익을 위하여 내수면어업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선군 내수면어업허가 대상지역 및 허가정수
(제11조 관련)

구간별	대상수계		인원	비 고
	읍·면	위 치		
계	4개읍면		24명	
제1구간	정선읍	광하교 ~ 봉양6리(세대)	2명	
제2구간		봉양6리(세대) ~ 오리장대교	2명	
제3구간		오리장대교 ~ 덕송취수장밀	2명	
제4구간		덕송(이절) ~ 문곡보밀	2명	
제5구간	북평면	문곡보위 ~ 남평교(검문소)	2명	
제6구간		남평교(검문소) ~ 장열취수장밀	2명	
제7구간	여량면	당너머 ~ 아우라지철교	2명	
제8구간		아우라지철교 ~ 새치보밀	2명	
제9구간		아우라지정자 ~ 구절리	2명	
제10구간	임계면	봉정보위 ~ 구미정	2명	
제11구간		구미정 ~ 봉산(합수거리)	2명	
제12구간		봉산(합수거리) ~ 덕암리	2명	

[별표 2]

정선군 내수면어업허가 규모 및 방법
(제14조 관련)

구분	자망	연승	패류채취	낭장망, 각망	투망	통발
신고					1구	적정량
허가	1구/50M	1구/200M	형망 : 2통 손틀 : 1구	5통		

제 정 이 유

- 정선군 내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건전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회의 구성 및 운영과 어업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제정.

주 요 내 용

-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및 대상 규정(안 제2조)
- 내수면어업조정협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내수면어업허가 구역 및 정수, 우선순위,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내수면어업허가 어구 등에 대한 제한사항 규정
(안 제14조 및 제15조)

제227회 정선군의회(2016. 2. 19.)에서 의결된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489호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강구하여야”를 “강구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사업보조금의 용도)”를 “(보조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전문인력 및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3.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제7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운영보조금의 용도)”를 “(보조금 회계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검사결과”를 “검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준용규정)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 1. “정선문화원” -----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정선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하나)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정선문화원” ----- <삭 제> <삭 제>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 ----- 강구해야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군수는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제7조(보조금의 용도)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전문인력 및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3.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사무의 검사 · 감독) ① (생략)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있는 경우 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8조(보조금 회계책임자)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 운영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9조(사무의 검사 ·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 결과 -----
-----.

③----- 없으면 -----
----- 해야 -----
-----.

제10조(예산의 반영) -----

----- 노력해야 -----.

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u>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u>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 --- <u>인정할</u>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규정) <u>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u>
---	--

개 정 이 유

- 정선군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 수행의 근거 규정 마련.

주 요 내 용

- 제2조 중 제2호 및 제3호 삭제
-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원 범위를 보조금으로 통합하여 규정 (안 제6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7조)
-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안 제8조)

제227회 정선군의회(2016. 2. 19.)에서 의결된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490호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정선군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의 규격, 디자인, 테마 등에 부합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광고물 정비 및 신설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3의 너란 다음에 더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광고물 등	수수료
더. 입간판	2,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군수는 정선군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 라인의 규격, 디자인, 테마 등에 부합 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광고물 정비 및 신설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개 정 이 유

- 정선군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 제작 권장을 위한 우수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의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 추가사항(입간판) 반영.

주 요 내 용

- 정선군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광고물의 정비 및 신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신설(안 제10조제4항)
- 광고물 신고 수수료 항목에 “입간판(2,000원)” 추가(별표 3)

제227회 정선군의회(2016. 2. 19.)에서 의결된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491호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등을 유

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성, 연령 등 신체적·사회적 특성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경관 조례」에 따른 정선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경찰서, 성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선군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 요 내 용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대상사업 규정(안 제8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추진 심의
- 정선경찰서, 정선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제227회 정선군의회(2016. 2. 19.)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92호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

주 요 내 용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지원

제227회 정선군의회(2016. 2. 19.)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493호

정선군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정선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나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군수의 관리 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감사실시의 결정 또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및 감사범위
2. 감사의 목적
3. 감사반 구성 및 분야별 감사 업무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통보)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감사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 감사관의 위촉 등) ①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의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3. 감사결과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 처리) 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정선군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 단 지 명 :

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별지 제3호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서

1. 대상단지 : (감사분야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

제 정 이 유

-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정.

주 요 내 용

-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나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
-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5조)
-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계획 통보, 감사반 운영 및 구성, 감사 실시 방법, 감사과정에서의 감사반 유의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감사 종료 후의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 및 통지,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처리사항 규정(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감사과정에서의 감사요청인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227회 정선군의회(2016. 2. 19.)에서 의결된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94호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번호	명 칭	위 치	비 고
1	정선공영버스터미널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	
2	고한·사북공영버스터미널	정선군 고한읍 지장천로 856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위치)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에 둔다.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 정 이 유

- 정선버스터미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로 운영.

주 요 내 용

- 조례 제명 띄어쓰기
 -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 ⇒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에 정선버스터미널 추가(안 제3조)